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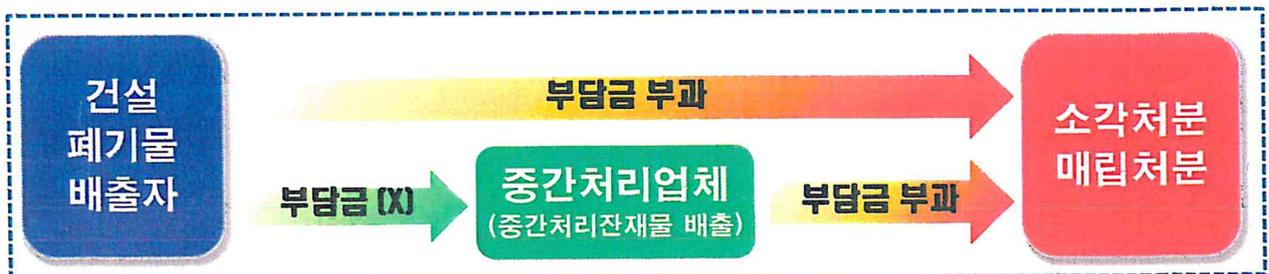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안내

I 개요

- 목적 : 폐기물의 소각·매립처분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선택하도록 경제적으로 유인
- 관련 규정(세부내용 #별첨 참조)
 -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17조 내지 제20조, 별표5, 별표6
- 시행시기 : '18.1.1
 - ※ '18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은 '19년도에 부과·징수
- 납부대상 및 부과·징수기관

구분	납부 대상	부과·징수기관
생활폐기물을 소각·매립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시장·도지사
사업장폐기물을 소각·매립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포함)	한국환경공단

- 부과체계
 - 건설폐기물을 소각·매립처분 시 해당 배출자에게 부과
 - 처리업체에서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중간처리잔재물(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을 소각·매립처분 시 해당 처리업체에게 부과



II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 · 감면 기준

- 산정기준 :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처분량에 부과요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과 산정지수(환경부고시)를 곱하여 산정

$$\text{폐기물처분부담금} = \text{폐기물처분량(kg)} \times \text{부과요율(원/kg)} \times \text{산정지수}$$

- 폐기물처분량 :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소각 또는 매립처분한 양
- 폐기물 종류별 부과요율
 - 폐기물 분류

생활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건설폐기물 제외) -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중간처리잔재물) 포함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 부과요율

폐기물 분류		요율 및 금액 기준	
		매립처분의 경우	소각처분의 경우
생활폐기물		kg당 15원	kg당 10원
사업장폐기물	불연성 ¹⁾	kg당 10원	-
	가연성 ²⁾	kg당 25원	kg당 10원
건설폐기물		kg당 30원	kg당 10원

처리
요율
체

- 1) 배출 단계에서부터 두 가지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분리가 어려운 폐기물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혼합되어 배출되는 잔재물 포함) 중 시험분석결과 가연성 물질의 함량이 중량기준으로 5% 미만인 경우에는 불연성폐기물로 간주 (시험방법·절차 등은 환경부 지침으로 별도 마련 예정)
 - 2) 불연성폐기물과 가연성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가연성폐기물로 간주
- 산정지수 : '18년도 기준으로 "1" 적용(물가 상승률에 따라 지수 변경)

○ 감면기준

- 감면대상별로 일정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나, 감면 대상이 2개 이상 해당 시 가장 높은 하나의 기준 각각 적용

대 상	감면 기준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중 연간 총매출액(최근 3년 평균) 120억원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120억원 : 50% 감면, 10억원 미만 100% 감면 ※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폐기물 처리업종은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 양의 합계가 연간 300톤 미만인 경우에 감면 적용 								
소각시설 이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각 시 소각열에너지 50% 이상 회수 이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font-size: small;">구 분</th> <th style="font-size: small;">50~60% 회수 이용</th> <th style="font-size: small;">60~75% 회수 이용</th> <th style="font-size: small;">75% 이상 회수 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font-size: small;">감면 비율(%)</td> <td style="font-size: small;">50%</td> <td style="font-size: small;">60%</td> <td style="font-size: small;">75%</td> </tr> </tbody> </table> ※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중간처리잔재물을 해당 시설에 위탁하여 소각처분한 경우 감면 적용 	구 분	50~60% 회수 이용	60~75% 회수 이용	75% 이상 회수 이용	감면 비율(%)	50%	60%	75%
구 분	50~60% 회수 이용	60~75% 회수 이용	75% 이상 회수 이용						
감면 비율(%)	50%	60%	75%						
자가매립시설 운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 매립시설에 매립 후 3년 이내 재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연도 : 100% 감면, 이후 2년 : 50% 감면 								
지정폐기물 배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하는 경우 100% 감면 								
도서지역 배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하는 경우 100% 감면 								
재난폐기물 배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복구계획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100% 감면 								
폐기물부담금 기 납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100% 감면 								

○ 감면적용 예시 (중간처리잔재물 기준)

<p>① 중소기업으로 감면받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30억 미만인면서 매립(불연성)처분량이 250톤인 업체의 부담금은 50% 감면조건을 충족하여 1,250,000원으로 산정 ☞ $250,000\text{kg}(\text{처분량}) \times 10\text{원/kg}(\text{부과요율}) \times 1(\text{산정지수}) \times 0.5(\text{감면비율})$
<p>② 소각시설(소각열에너지 50% 이상 회수) 이용자로 감면받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각열에너지 회수율이 65%인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가연성폐기물 500톤을 소각처분한 업체의 부담금은 50% 감면조건을 충족하여 2,500,000원으로 산정 ☞ $500,000\text{kg}(\text{처분량}) \times 10\text{원/kg}(\text{부과요율}) \times 1(\text{산정지수}) \times 0.5(\text{감면비율})$

III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납부

○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및 납부절차



○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및 감면신청서 작성 요령

구 분	작성 내용	첨부 서류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기본정보 및 담당자 정보 □ 납부의무자 구분 및 감면대상 여부 □ 소각 및 매립처분한 폐기물 종류 □ 폐기물종류별 처분방법 □ 폐기물 종류별 처분량 및 납부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등록증(최초 신고) □ 배출자 신고증명서 사본 □ 위·수탁계약서 사본(위탁 처분) □ 폐기물처분시설 설치승인서 사본(스스로처분) □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등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 기본정보 □ 납부의무자 구분 및 감면사유 □ 감면대상 폐기물의 종류 □ 폐기물종류별 처분방법 □ 폐기물종류별 처분량 및 감면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각열에너지 회수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분량 증명자료·소각열 회수 효율 인정(에너지효율인정서) □ 중소기업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확인서 사본, 연간 매출액 증명자료

IV 참고사항

-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및 감면 신청은 관련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각각 신청해야 함(감면 미신청 시 감면 혜택 없음)
 - 미 신고 및 허위 신고 시 조치 :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방법
 - 납부 방법 : 현금 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납부
 - ※ 납부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2회(매년 5.20, 10.20)로 분할 납부 가능
 - 미 납부 시 조치 :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가산금 부과 및 체납 처분)
 - ※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감면신청, 분할납부 신청 등을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시스템 (www.budamgum.or.kr) 이용('18. 3월 이후 서비스 예정)

□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

제21조(폐기물처분부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2.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징수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폐기물 매립지를 직접 조성하고 향후 재활용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매립하는 경우

2. 폐기물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폐자원에너지를 일정 기준 이상 회수하는 경우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된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처분한 폐기물의 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④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감면 기준, 납부 시기·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폐기물처분부담금이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⑦ 폐기물처분부담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31조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된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⑨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폐기물 소각시설 또는 매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17조 내지 제20조

제17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 “폐기물처분부담금”이라 한다)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폐기물 매립지를 직접 조성하고 향후 재활용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매립하는 경우
 2. 폐기물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의2에 따른 폐자원에너지를 일정 기준 이상 회수하는 경우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된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6. 도서[「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島嶼)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당 도서 내에서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7.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 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 부과·징수 대상자가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관계 행정기관에서 재난으로 인한 피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 ②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8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부과)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정지수는 최초 적용연도를 1로 하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에 전년도 생산자물가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③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부과한다.

1. 폐기물을 매립한 연도의 다음 연도: 폐기물을 매립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재활용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폐기물에 대하여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폐기물을 매립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폐기물을 매립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재활용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폐기물에 대하여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제19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시기·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이하 “납부의무자” 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에 대한 폐기물의 종류별 소각·매립 처분량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부의무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할 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감면금액의 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실적을 폐기물을 매립한 해당 연도부터 3년간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납부의무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매년 5월 20일까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한다. 다만, 제3항 후단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나누어 내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내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또는 검사 결과 납부의무자가 내야 할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있거나 이미 납부한 금액이 내야 할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 또는 차액을 낼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20일까지로 한다.

제20조(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의 특례) 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설폐기물을 포함한다)을 배출하는 납부의무자는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폐기물의 배출이 종료된 연도의 경우에는 폐기물 배출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연도에 대한 폐기물의 종류별 소각·매립 처분량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그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납부한 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와 감면금액의 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폐기물의 배출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감면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5(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

감면대상	감면비율 (단위: 퍼센트)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직접 설치·운영하는 폐기물매립시설에 폐기물을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하지 않고 별도로 매립한 후 2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해당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가. 폐기물을 매립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재활용한 경우 나. 폐기물을 매립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2년 이내에 재활용한 경우	100 50
2.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각열에너지를 50퍼센트 이상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가. 소각열에너지를 75퍼센트 이상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나. 소각열에너지를 6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다. 소각열에너지를 5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미만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	75 60 50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품·재료·용기에 대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해당 제품·재료·용기를 매립 또는 소각하는 경우	100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연간 매출액 120억원 미만인 경우 가.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나.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경우	100 50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하는 경우	100
6.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당 도서 내에서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100
7.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하는 경우 나. 가목 이외의 경우로서 부과·징수 대상자가 재난으로 인해 발생된 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하는 경우(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재난으로 인한 피해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100

비고

1. 제2호에서 소각열에너지를 회수하여 이용하는 비율(이하 “소각열에너지 회수효율” 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가. 회수에너지 총량을 투입에너지 총량으로 나눈 비율로 산정하되, 세부 산정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 나. 2기 이상의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처분하는 경우 개별 소각시설 별 소각열에너지 회수효율을 소각량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부과·징수 대상자의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후 운영하는 2기 이상의 소각시설에서 처분하는 경우로서 개별 소각시설별로 처분한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증명하는 경우에는 각 소각시설별로 소각열에너지 회수효율을 산정할 수 있다.
2. 제4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의 연간 합계가 300톤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 나.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 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을 등록한 자 또는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폐가스류처리업을 등록한 자

□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6(폐기물처분부담금의 산출기준)

폐기물 분류		요율 및 금액 기준	
		매립하는 경우	소각하는 경우
1. 생활폐기물		kg당 15원	kg당 10원
2. 사업장폐기물	가. 불연성	kg당 10원	-
	나. 가연성	kg당 25원	kg당 10원
3. 건설폐기물		kg당 30원	kg당 10원

비고

1. 폐기물의 분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나.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다목에 따른 건설 폐기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 중 불연성폐기물과 가연성폐기물의 분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불연성폐기물은 무기성오니류, 폐합성고분자화합물(열경화성수지로 한정한다), 광재류, 분진류, 폐주물사 및 폐사, 폐내화물, 폐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폐촉매(금속성 폐촉매로 한정한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광물류로 제조된 것만 해당한다), 폐석고 및 폐석회, 연소잔재물, 폐석재류, 폐패각, 폐토사류, 폐콘크리트류,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금속류, 폐유리류, 폐타일, 폐전주, 폐소화기류, 폐전지류, 폐흑연가루를 말한다.

나. 가연성폐기물은 가목에 따른 불연성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배출 단계에서부터 두 가지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분리가 어려운 폐기물(폐기물을 재활용 하는 과정에서 혼합되어 배출되는 잔재물을 포함한다) 중 시험분석 결과 가연성 물질의 함량이 중량기준으로 5% 미만인 경우에는 불연성폐기물로 본다.

다. 불연성폐기물과 가연성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가연성폐기물로 본다.

3. 불연성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의 요율을 적용한다.

가연성폐기물 분리배출 · 보관 요령

1. 반입된 건설폐기물에서 가연성폐기물 분리(1차)



2. 처리공정에서 가연성폐기물 분리 · 선별(2차)



<폐합성수지 폐점유 등>

3. 가연성폐기물 건조 및 불연성폐기물의 제거



물에 젖은 가연성폐기물 건조



가연성폐기물에서 흙, 모래 등 제거

4. 가연성 · 불연성폐기물 분리 보관

<옳은 예>



분리 보관

<틀린 예>



혼합 보관